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정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한 부분을 삭제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8조 ~ 제11조 삭제
 - 조례 제6조에서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역할을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임기 등은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에도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창군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 제7조를 준용 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</p>	<p><삭 제></p>

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
연 락 처	(033)330-2540

관련 조례

□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

제6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그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.

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